

보 도 자 료

2008 년 5 월 9 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08. 5. 8 (목)	담당자	오영수 정책연구실 실장
홍보담당	변철성 선임담당역	연락처	02-368-4451 총 7 매

제 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응하여 장기간병보험 운영시스템 전면 보완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응하여 장기간병보험 운영시스템 전면 보완 필요

2008 년 7 월 1 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는 것에 대응하여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장기간병보험 상품의 운영이 전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낸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 오영수 정책연구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충하여 장기간병보험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보장 내용과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상품 측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특성이 다른 연금보험상품 등과 결합되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 충족을 위해서는 실손형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나 각종 제도 및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정액형 상품에 주력한 후 중장기적으로 실손형 상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품개발과 아울러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데, 특히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평가 및 판정 체계 일원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일원화가 되지 않을 경우 요양등급 판정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민원이 발생하여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회사 차원에서는 상품이 복잡하고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전문적 모집조직을 통해 판매하되 설명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역선택 방지를 위한 언더라이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장기간병보험이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상품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데, 이를 세제혜택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장기간병보험 상품 운영과 관련하여 규제가 필요한 분야는 요율, 설명의 의무, 소비자교육 등의 분야인데, 이들 규제를 수용하는 상품의 경우 보장성보험과는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영수 정책연구실장은 이렇게 장기간병보험 상품이 운영될 경우 국민들은 노후장기요양에 대한 보장성이 효율적으로 강화됨은 물론 세제혜택과 함께 소비자보호도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요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요약)

I. 환경변화에 따른 장기간병보험의 필요성

1. 장기간병보험을 둘러싼 환경변화

가. 고령자 수의 증가

- 고령화율은 2006 년 9.5%에서 2020 년 15.7%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80 세 이상 노인의 수도 2010 년 39 만 명에서 2020 년 80 만 명으로 증가한 후 2030 년에는 125 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
- 65 세 이상의 노인 중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비중을 14.8%라 할 경우 2010 년 79 만 명에서 2020 년 114 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

나.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 핵가족화에 이어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으로 후세대가 가정 내에서 노인을 부양한다는 전통적인 가족기능이 어려워짐
 - 이에 따라 노인가구의 경우 노인에 의한 노인수발이 현실적으로 정착될 수밖에 없으며, 이조차도 사별 등을 계기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 수발 기간의 장기화

- 2004년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간 수발기간이 전체의 약 39%이어서 수발자의 육체적 피로,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라. 고령자의 자산 및 소득 증가

-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물론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어 과거 세대와 달리 자산 및 소득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 전망
- 민영 장기간병보험 가입 의향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을 활용하여 간병비용을 조달하려는 고령자 인구도 증가 전망
 - 고령자들이 간병비용 지불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고급의 간병 시설 및 서비스를 수요할 전망

마. 노인 의료비 급증

- 전체 의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그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전체 의료비 중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킬 것임

바.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인력

-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시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
 - 일부 병원시설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음
- 장기요양요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 년 7 월부터 도입될 예정인데,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2008 년부터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65 세 인구 중 요양보호가 필요한 72 만명의 22.2%인 16 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범위 미흡
 -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아 이를 보완할 보충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임
 - 재가서비스의 경우 가족요양비 지원이 시설이 없는 지역에만 한정되며, 급여 수준도 지나치게 낮아 수발을 맡고 있는 가족에 대한 배려가 미흡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장기간병보험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음

II. 장기간병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장기간병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제 3 보험 영역에 속함
 - 2008 년 1 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6 개사와 손해보험회사 3 개사가 상품을 주계약 형태로 판매중임

2. 문제점

- 민영 장기간병보험 등 보험을 활용하여 요양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수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장기간병보험의 판매량이 부족하고 보험금 지급 실적도 미미하여 상품개발을 위한 경험률 축적이 미흡함
- 경험위험률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개발이 이루어져 안전할증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높은 수준임
- 장기간병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높은 상품인데 이를 적절히 통제할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역선택 방지 장치의 미비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집적하여 이를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는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큼
- 도덕적 해이는 피보험자의 장애 상태를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판정할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임

□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상품개발, 마케팅,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등의 분야에서 장기간병보험 전문인력을 갖지 않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을 앞두고 요양 인프라의 확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수준이 아니며, 더구나 합리적인 기준 등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III. 장기간병보험 운영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적절한 역할 분담

- 비용의식을 통한 국민부담의 적정화, 제도 운영의 효율화, 선택 기회 확대를 통한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간병보험간 적절한 역할 분담 필요
 - 장기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고급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상품 개발도 필요

2. 상품개발 전략

- 장기간병보험 상품은 리스크가 큰 점을 고려하여 위험률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정액형보험 위주로 상품을 개발하고 점차로 고객의 선호에 맞추어 실손형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간병보험의 경우에도 리스크의 특성이 보완적인 상품과 결합되어 개발됨으로써 리스크를 상쇄함은 물론 계약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장기간병보험을 즉시연금보험 또는 주택연금 등과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3. 판매채널 및 판매기법의 전문화

- 보험제도 운영 및 보험상품이 복잡하고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판매채널 및 판매기법의 전문화 필요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장기간병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려는 역선택과, 가입 후 건강상태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높으므로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장기간병보험은 판매과정에서 상품설명을 위해 건강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집조직의 전문화가 필요함

4. 언더라이팅 제도 확립

- 역선택의 가능성 및 고객 분쟁을 줄이고 적절한 요율 적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등과 연계하여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가입 시 언더라이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언더라이팅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언더라이팅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의료기록 평가, 대면평가 등이 행해져야 할 것임

5. 간병대상자 평가·판정 체계의 일원화

- 공적 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민영 장기간병보험이 보충적 역할을 한다는 전제 하에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판정 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6. 리스크 전가 방법의 다원화

- 장기간병보험 관련 재보험 시장을 적절히 발달시킴으로써 장기간병보험의 리스크를 적절히 전가할 수 있게 하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7. 세제 혜택

- 세제 적격 요건을 마련하고 충족할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가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 등으로 급부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자조노력에 입각하여 장기요양 비용을 보험제도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해줌
 - 세제적격 요건을 통해 소비자보호, 공시, 소비자교육 등과 같은 규제를 시장원리에 따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음

8. 규제 및 감독

- 기초위험률이 체계적으로 집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초 인가시 요율의 적정성을 잘 살펴야 할 것이며, 이후 보험료율을 갱신할 때마다 인상률이 적정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

- 장기간병보험은 질병, 건강상태 등과 관련된 용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상품 판매시 적절한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
 - 이와 아울러 실손보험의 경우 부적절한 승환계약을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감독
 - 보험금부의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서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기간병보험의 필요성을 조기에 인식시키고 상품 구입시 유의할 점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교육을 강화
- 보험분쟁은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해결에 맡겨두되,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장기간병보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9.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인력

- 실손형 장기간병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직접적 연계를 통한 비용 효율성 제고 필요
-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인력과 관련한 사업의 수익성 및 장기적 고려 차원에서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대부분 요양시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평판과 브랜드를 활용하여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음